

주성엔지니어링(주)

이사회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유고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대행자의 지정방법은 이메일, 서면 등으로 한다.
- ③ 대표이사에 의한 직무대행자 지정이 없는 경우,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.
- ④ 의장은 이사회 의정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
제6조(감사의 출석)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지 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인의 참석)

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

제8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초 세 번째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9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0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의 전일 **10일 전**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통지의 방법은 유선전화, 팩스, 우편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

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1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부의안건)

- ① 이사회에 부의 및 보고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
제13조(권한의 위임)

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4장 위원회

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은 본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16조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함)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제17조(이사회에의 재부의)

위원회는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,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18조(위원회 부의사항)

- ①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다.

제19조(통지의무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이사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 결의할 수 있다.

제5장 기 타

제20조(부속실 등)

- ①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- ② **이사는 필요 시 이사회 결의 없이 법률, 회계, 경영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.**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이사회 부의 및 보고사항

[이사회 부의사항]

1.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, 공동대표의 결정
- (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3) 지점의 설치·이전·폐지
- (4) 경영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 및 위원의 선임·해임
- (5) 경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심의, 결의
- (6) 주주총회의 소집
- (7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8)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
- (9)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
- (10)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
- (11)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(12) 신주발행, 사채의 발행
- (13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4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5)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
- (16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17) 중간배당의 결정
- (18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19) 간이합병,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 분할합병
- (20) 일반공모증자의 결정
- (21)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
- (22)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
- (23)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
- (24) 교환사채의 발행
- (25)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
- (26)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(기타비상무이사)

2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가.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

- (1) 정관 변경
- (2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- (3)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
- (4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등
- (5) 이사·감사의 해임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회사의 해산, 회사의 계속
- (8) 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
- (9) 사후설립
- (10) 주식의 액면미만 발행
- (11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2) 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의 소각
- (13)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

나. 보통결의 사항

- (1) 이사, 감사의 선임
- (2) 이사, 감사의 보수의 결정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주식배당의 결정

다. 특수 결의

- (1) 이사·감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2)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

3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
- (1)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(신규사업 Project 착수여부에 대한 결정 포함)
- (2)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(3)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
- (4)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
- (5) 50억 이상의 취득, 처분 및 양도
- (6) 50억 이상의 신규 차입

- (7)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
- (8)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
- (9)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
- (10) 기업정보공시의 감독
- (11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(12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(13)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- (14)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(15) 50억 이상의 출자, 처분 및 50억 이상의 시설투자
- (16) 50억 이상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 및 채무면제
- (17)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**
- (18) 안전보건업무 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평가**
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- (19) 환경(E), 사회(S), 지배구조(G) 등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비재무적 주요 경영 현안 검토·승인**

[이사회 보고사항]

1. 이사는 3개월에 1회이상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2. 경영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.
3.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5.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연계된 환경경영 이슈 및 성과**
- 6. 그 외 기타 주요 환경경영 이슈 및 성과**